

조세에 대한 법규 각 새로운 문서와 일부 중요정책의 업데이트

2018년 9월



JAN

02

03

APR

05

06

JUL

08

09

OCT

11

12

Content

이런 문서중에,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최근 일부 법규문서와 조세에 대한 중요 정책 안내들을 고객님에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



수출용 생산을 위한 가공으로 보내는 수입상품의 수입세의 면세 불가능.

2.



매출금 500억이하 와 연결 총거래액이 300억이하인 독립 지점과 연결거래에 대한 신고의 면제.

3.



외국에 형성된 IT제안의 비용 인정.

4.



기업소득세 계산 할때 연결측의 보증된 차입금 이자의 항목은 법인세소득부담으로 공제되는지?

5.



투자제안은 활동중의 투자제안의 자산을 사용하면 새로 허가된 투자제안으로 볼수 없다.

6.



베트남에 영업활동의 외국상인에 대한 혼합방법으로 세Code발급과 공사계약자의 세금 계산을 진행한다.

JAN

02

03

APR

05

06

JUL

08

09

OCT

11

12



1. 수출용 생산을 위한 가공으로 보내는 수입상품의 수입세의 면세 불가능.

재정부는 문세 제8628/BTC-TCHQ호를 2018/07/19일에 수출용 생산을 위한 상품수입에 대한 수입세 면제를 발표한다. 본문세에 의하면 재정부는 2016/09/01일 부터 (의령서 134/2016/ND-CP호의 발효일), 다음의 경우엔 면세된 상품으로 확정근거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수출용 상품생산을 위한 상품수입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들은 수출상품을 직접 전부 생산 하지 않고 수입상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조직, 개인에게 줘서 하나 혹은 일부 단계가공을 진행한후 가공된 상품을 다시 받아와 계속 생산 및 상품 수출 하는 경우; 혹은



수입물을 생산산에 투입하고 그후 조직, 개인에게 일부 단계가공을 임대시킨후 가공후의 상품을 다시 받아와 계속 생산 혹은 상품수출하는 경우;

상기 경우엔 기업은 임가공에 보낸 상품의 량에 대한 수입면세를 불가능한다.

2. 매출금 500억이하 와 연결 총거래액이 300억이하인 독립 지점과 연결거래에 대한 신고의 면제.

2018/08/02일에, Hà Nội세국은 문서 제54153/CT-TTHT 호를 발표해서 연결거래 서류 작성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에 따라, 기업의 지점은 독립적 결제를 하고 회계팀과 따로 흑/적자계산을 하면 만약 매출금 500억이하 와 연결 총거래액이 300억이하인 경우에 지점이 의령 제20/2017/NĐ-CP호의 규정에 따른 연결거래 가격 확정서류의 작성면제를 받는 대상에 속한다.



JAN

02

03

APR

05

06

JUL

08

09

OCT

11

12

3. 외국에 형성된 IT제안의 비용 인정.

Hà Nội 세국은 최근에 문서53064/CT-TTHT호를 2018/07/31일에 발표해서 외국에 형성된 IT제안의 비용 인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안내 문서에 의하면 베트남의 회사는 외국회사와 IT 기술제안을 진행하는 협력 계약의 합의 서명을 한 경우; 그중 외국회사가 인건비지급, Hardware & Software 구매비용 지급 및 베트남회사에 삽입된 서비스를 공급해줘 제안 작성 운영 진행한 경우; 베트남회사와 외국 파트너가 계약중 각 지급항목 (Hardware & Software 및 서비스) 들을 다로 구분할수있고 제안 완성될때 베트남측은 그런 비용을 외국측에게 지급해주고 외국에 자산전부의 인수인계를 받은 동시에 매 설비의 serial과같이 구체적 정보와 Software Licence 및 매항목들을 공급해준 부 공사계약자 성명을 받고 그중엔 베트남인수회사는 그런자산에 대한 전 권한소유를 하게된 규정으로 되면 Hardware & Software의 가치는 유형과 무형고정자산의 인정 각 기준들을 만족된 경우와 회사도 자기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보유 및 그런 자산의 합법소유권의 베트남 실권기관의 인정이 있으면 회사는 감가상각을 규정처럼 진행할수 있다. 규정 조건 만족된 감가상각비용은 법인소득세 부담 계산을 할때 공제 비용으로 보게된다.



회사는 network master의 자기 소유권인 법적규정의 증명서류 부족된 경우엔 회사는 그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를 할수 없다.

4. 기업소득세 계산 할때연결측의 보증된 차입금 이자의 항목은 법인세소득부담으로 공제되는지?

Hà Nội 세국은 최근에 문서 제43767/CT-TTHT 호를 2018/06 /16일에 기업소득세 계산할때 연결측의 보증된 차입금 이자의 항목은 법인소득세의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한다.

그에 따라, 세국측은 회사가 규정대로 타사와 연결거래관계(각은행의 차입항목에 대한 보증 거래)와 독립측과 발생 거래 (은행의 차입 거래)들이 있으면 회사는 차입금 이자비용을 의령서20/2017/NĐ-CP의 제8조3목의 안내처럼 법인세부담 계산시 공제 되고 (영업활동의 순이익과 기간중 차입이자 와 감가상각 비용의 총합 의 20%이하 임). 그중에 상기 반영의 원칙으로 정하는 차입금 이자 비용은 회사의 기간중 발생된 차입 이자의 총 비용이다 (연결측 혹은 독립측부터 발생된 차입금이자비용의 구분이 없음).





5. 투자제안은 활동중의 투자제안의 자산을 사용하면 새로 허가된 투자제안으로 볼수 없다.

Hà Nội세국서는 문서 43609/CT-TTHT호를 2018/06/25일에 발표해서 활동중의 투자제안의 자산을 사용하는 투자제안에 대한 세금 우대에 대한 선명을 한다.

상기 문서에 의하면 새로운시,성에 투자하는 제안에 다른 시,성에 활동하고 있는 투자제안의 일부기계,설비를 옮겨쓰는 경우에 새투자제안의 완료와 생산에 투입되고 소득이 있는 해(년)에 회사는 새투자제안의 투자우대지역의 조건만족으로 법인세수혜의 선택을 하면:



새 시,성에 투자제안은 타 시,성에 활동하는중의 기계설비 **lines**를 옮겨쓰는 경우에 새로 투자제안이 아니고 활동하고 있는제안과 독립적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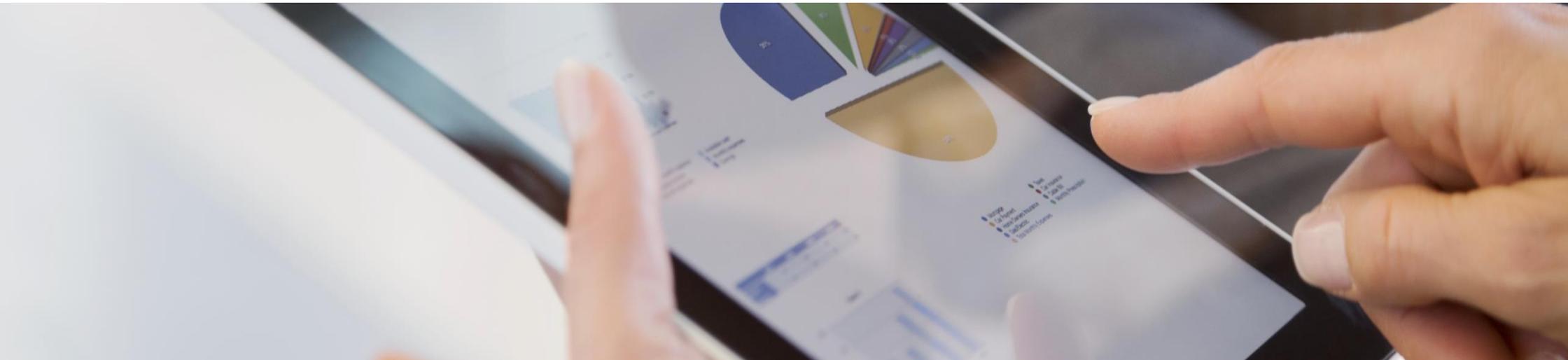
규정된 증선투자제안의 3개기준을 보장하고 제안투자 장소가 유리된 사회경제 조건있는 지방에 아닌 공단중에 있는 경우엔 회사는 같은 지역에 새투자제안에 적용된 세금 면간 시간과 같은 증선투자로 인한 가져온 증가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 감시간적용이 된다(구체로: 법인세 2년 면제와 다음 4년내 법이세 50% 감세적용.)

6. 베트남에 영업활동의 외국상인에 대한 혼합방법으로 세Code 발급과 공사계약자의 세금 계산을 진행한다.



2018/08/08일에 세총국은 문서 제3065/TCT-KK호로 혼합방법으로 공사계약자의 신고용 세Code, 납세에 대한 안내를 한다. 구체로 베트남에 출두하지 않는 외국 상인의 경우엔 베트남법인 설립이 아니고 베트남고객과 무역계약을 서명하는 경우에 그회사는 실권기관의 발급된 수출입권등록증인서의 보유가 있어야 된다.

실권기관의 발급된 수출입등록증인서를 받은후 회사는 규정처런 혼합방법인 세금 등록, 계산을 진행해야 한다.



Contacts

본소식통은오직참고목적으로만사용한다

고객님께서 조세,외국인의활동, 생산영업과정에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Grant Thornton 의 전문가들과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객님은상기소식통을DOWNLOAD

을하고싶면우리의다음web에들어오셔서

검색해주시면된다

grantthornton.com.vn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National Head of Tax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Hiroshi Mitsushige

Manage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9
E hiroshi.mitsushige@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